

- (2) 거절결정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또는 연장된 기간 이내)
 - (3) 특허결정 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설정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 5-2. 분리출원기간(52-2①)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심결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또는 부가기간 이내)
6. 변경출원기간(53①)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또는 연장된 기간)까지 변경출원이 가능하다. “최초”거절결정등본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므로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여 원거절결정이 취소되었다가 다시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불가하다.
7. 분할·분리·변경출원의 조약우선권증명서류 제출(52⑥, 53⑥)
 조약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분할·변경출원하는 경우, 최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분할·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참고로 분리출원은 위 +3개월 기간에 관한 규정 없다(52-2②).
- 7-2. 분할·변경출원이 외국어출원인 경우 국어번역문 제출(52⑦, 53⑦)
 외국어로 분할·변경출원을 하는 경우, 최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분할·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어번역문 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 7-3. 분할·변경출원의 청구범위 제출(52⑧, 53⑧)
 청구범위 기재 없이 분할·변경출원을 하는 경우, 최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분할·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8. 조약우선권주장(제54조) 관련 기간
- (1) 우선기간(54②)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기간」 내에 출원하여야 하는데, 우선기간은 특허 및 실용신안은 12월, 디자인 및 상표는 6월로 규정하고 있다(파리조약).
 - (2) 증명서류의 제출(54⑤)
최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54⑦)
최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9. 국내우선권주장(55, 56) 관련 기간
- (1) 우선기간(55①)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 (2)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55⑦)
최선출원일로부터 1년 4월 이내에 당해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 (3) 선출원의 취하간주일(56①)
우선권주장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 (4) 우권권주장의 취하 가능시기(56②)

05 특허권, 실시권, 질권

1. 내용 개괄

특허료 → 등록 → 동의 → 기타 → 존속기간연장 → 실시권

2. 특허료 (납부액/납부기간/납부자/효력제한기간, 법정실시권/기타)

가. 납부액

특허료 납부는 선납개념으로서¹⁰⁷⁾¹⁰⁸⁾, 등록료는 최초 3년분(79①), 유지료는 최소 1년분(79①) 미리 납부해야 한다.

나. 납부기간 (원납부기간/추가납부기간/보전기간/추후보완, 권리회복신청)

1) 원납부기간

등록료 -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납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8⑤)

유지료 - 해당년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납부(79①)

2) 추가납부기간(81)

추납기간 6월

원래 납부 금액의 2배 범위 내에서 금액 가산됨

추납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까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의 경우는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의 경우는 납부된 특허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3) 보전기간(81-2)

특허료 납부기간 또는 추납기간에 일부 납부 시 특허청장은 보전 명령 must

원래 납부 금액의 2배 범위 내에서 금액 가산됨

보전기간 1월

4) 추후보완, 권리회복신청(81-3)

등록료 또는 유지료를 **정당한 사유**로 추납기간 또는 보전기간에 추납 또는 보전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소멸일부터 2월 내 추납 또는 보전 可¹⁰⁹⁾

추납 또는 보전한 경우 그 특허출원은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계속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

유지료를 추납기간 또는 보전기간에 추납 또는 보전하지 못한 경우 추납기간 또는 보전기

107)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 일괄 납부도 可(79②)

108) 구체적인 납부 기간 등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8 참고

109) 단, 추납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不可

6. 권리범위확인심판 (의의/주요 방식요건/실체심리)

가. 의의

확인대상발명과의 관계에서 특허권의 보호범위의 공적인 확인을 요구하는 심판(135)²⁵⁵⁾

나. 주요 방식요건 (141 / 심판청구이익)

	적극적 권확	소극적 권확
청구인	특허권자 ²⁵⁶⁾ 또는 전용실시권자	이해관계인[실시자 또는 실시예정자(判)]
피청구인	이해관계인[실시자 또는 실시예정자(判)]	특허권자 ²⁵⁷⁾
청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항마다 청구 可(135②)²⁵⁸⁾ • 심판청구서에 첨부한 확인대상발명을 바탕으로 심리 	
청구시기	현존하는 특허권에 대해서만 청구 可(判)	

Cf) 확인대상발명 특정 관련 - 심판청구이익 관련

1.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실시 발명과 상이한 경우

특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判).

2. 확인대상발명 특정 여부 및 흠이 있는 경우 심판원의 조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등록고안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만약 확인대상고안이 불명확하여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의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判).

255)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적극적 권확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요구하는 심판이고,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는 소극적 권확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요구하는 심판임

256) 공유인 경우 공동으로(139③)

257) 공유인 경우 공동으로(139②)

258) 청구항별로 청구취하 可(161②), 청구항별로 심결

(대상) 절차가 계속 중인 출원⁹⁸⁾(64①)

(시기) 최우선일부터 1년 6월이 지난 후 임의의 시점(64①)⁹⁹⁾

(공개내용) 최초 명세서 및 도면 또는 외국어출원의 경우 번역문¹⁰⁰⁾, 심사청구사실¹⁰¹⁾(령 19③)

(효과) 서면경고 可(65①), 보상금청구권 발생 可(65②-⑥), 확대된 선원의 지위 발생 전 제조권(29③), 우선심사신청 가능한 사유 발생 可(61 i), 29①각호의 지위 발생, 기탁된 미생물 시료분양 可(령4① i), 서류의 열람 신청 可(216)

Cf) 공개×

청구범위 기재하지 아니한 출원(64② i), 외국어특허출원 중 42-3②에 따른 국어번역문 제출하지 아니한 출원(64② ii), 등록공고 한 특허(64② iii), 41①에 따라 비밀취급된 발명(64③),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령19③但)

5. 보상금청구권

(의의) 보상금청구권이란 공개된 발명에 대한 제3자의 모방·도용으로부터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원공개 후 경고를 받거나 또는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에게 경고를 받거나 또는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출원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합리적으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출원인에게 부여해 주는 권리를 말한다.

(쟁점) 특허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권리임(65④), 출원의 설정등록 후에 행사 可(65③), 특허권 침해 시 인정되는 규정 중 간접침해(127), 생산방법의 추정(129), 서류의 제출(132), 공동불법행위책임(민760), 및 소멸시효(민766) 규정 준용(65⑤)¹⁰²⁾, 출원이 무효·취하·포기·거절결정확정·거절심결확정되거나,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후발적 무효사유 제외) 보상금청구권 소급 소멸(65⑥)

6. 국방상 필요한 발명

(의의) 국방상 필요한 발명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방위산업분야의 발명에 대하여는 공익을 위하여 특수한 취급을 가하고 있다

98) 무효·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거절결정·거절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출원 / 등록공고 되지 아니한 출원(64①단서) / 국방상 필요한 발명으로서 비밀 취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출원(64③) / 번역문이 제출된 출원 / 청구범위가 기재된 출원(64①단서)

99) 출원인의 조기공개신청도 可(시규44)

100) 단, 공공의 질서·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함(령19③단서)

101) 단 출원공개시에 그 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발행되는 공개특허공보에 심사청구사실을 게재(60②, 령19③viii)

102) 특허권 침해 시와 달리 침해금지청구(126), 손해액의 추정(128) 및 과실의 추정(130) 규정 등은 준용 不可

구분	조항	내용
보정제한	제47조제5항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명세서 등을 보정할 수 있음 ³³⁰⁾
외국어 PCT 출원의 경우	제208조제1항제2호	수수료+번역문+기준일
분할출원 제한	제52조제1항단서	분할출원의 원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이면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출원 가능 ³³¹⁾
분할출원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제52조 제7항	분할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이면 최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일부 30일 이내 국어번역문 제출 가능 ³³²⁾
변경출원 제한	제53조제1항제2호	변경출원의 원출원이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변경출원 가능
변경출원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제53조제7항	변경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이면 최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일부 30일 이내 국어번역문 제출 가능
외국어 PCT 출원의 경우	제209조	수수료+번역문
심사청구	제59조제2항제2호	출원인 :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청구 불가 ³³³⁾ 제3자 : 기간제한 없음
외국어 PCT 출원의 경우	제210조	출원인 : 수수료+번역문 제3자 : 국내서면제출기간 또는 1개월 연장기간 이후(기간제한 있음)
출원공개	제64조제2항제2호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원공개 불가
외국어 PCT 출원의 경우	제207조	진입완료 후+우선일 1년 6개월 경과+국제공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원공개 불가)

330)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 특허법 제42조의3 제5항에 따라 국어 명세서 및 도면이 있어야, 국어 명세서 및 도면을 바탕으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가능하다. 특히 국어번역문이 없으면 특허법 제47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명세서 적법요건 자체의 판단이 곤란한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전에 반드시 국어번역문이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

331)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특허법 제52조 제1항). 다만 실무에서는 심사편의를 위해 원출원의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이 외국어인 경우 그 국어번역문을 참고해서 원출원의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도록 운용한다. 이에 분할출원 전에 먼저 원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변경출원 또한 마찬가지다.

332) 분할출원은 특허법 제5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5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특허법 제42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했다 하더라도(분할출원은 출원일 소급효가 있어 분할출원을 한 시점이 법리적으로 특허법 제42조의3 제2항을 도과했을

5. 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국어번역문 제출	청구범위 보정
번역문 제출 후에만 명세서·도면 보정 가능(제47조 제5항 / 제208조 제1항 제2호)	-
번역문 제출 후에만 분할출원 가능(제52조 제1항 단서)	-
분할출원시 +30일(제52조 제7항)	분할출원시 +30일(제52조 제8항)
번역문 제출 후에만 변경출원 가능(제53조 제1항 제2호 / 제209조)	-
변경출원시 +30일(제53조 제7항)	변경출원시 +30일(제53조 제8항)
번역문 제출 후에만 출원인 심사청구 가능(제59조 제2항 제2호 / 제210조)	청구범위 적은 후에만 출원인 심사청구 가능(제59조 제2항 제1호)
번역문 제출 후에만 출원공개(제64조 제2항 제2호)	청구범위 적은 후에만 출원공개(제64조 제2항 제1호)
-	청구범위 제출 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정당권리자 출원(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5호의2)
분리출원 불가(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5호의3)	분리출원 불가(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5호의3)
번역문 제출 후에만 분할출원 가능(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0호)	-
번역문 제출 후에만 변경출원 가능(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0호)	-
번역문 제출 후에만 출원인 심사청구 가능(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0호)	청구범위 제출 후에만 출원인 심사청구 가능(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5호)
번역문 제출 후에만 조기공개신청 가능(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0호)	청구범위 제출 후에만 조기공개신청 가능(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6호)

효과	출원일 소급효 (특허법 제52조 제2항)	출원일 소급효 (특허법 제53조 제2항)
	원출원 우선권 자동승계 (특허법 제52조 제4항)	-
중복특허 취급	청구범위 중복시 거절이유통지 (특허법 제36조 제2항)	원출원 취하간주 (특허법 제53조 제4항)
기타	원출원 번역문 제출 후 가능 (특허법 제52조 제1항 단서)	원출원 번역문 제출 후 가능 (특허법 제53조 제1항 제2호)
	+3개월, +30일, +30일 (특허법 제52조 제6항 내지 제8항)	+3개월, +30일, +30일 (특허법 제53조 제6항 내지 제8항)
	+30일 (특허법 제59조 제3항)	+30일 (특허법 제59조 제3항)

	분리출원
주체	원출원인
기간	거분심 기각심결문 받은 후
서면	출원서에 취지 및 원출원 표시
효과	출원일 소급효
	원출원 우선권 자동승계
기타	심사청구기간 +30일, 외국어출원, 임시명세서출원, 재분할·분리·변경출원, 재심사청구 不可

10. 우선권주장절차

주요내용요약		
조약우선권 주장절차	주체	조약당사국 국민 또는 조약당사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서 조약 당사국 출원인 또는 승계인
	서면	출원서에 취지, 기초출원 국가명, 기초출원 연월일 기재
증명서류첨부 (둘 중의 어느 하나)		조약 당사국 정부가 인증하는 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

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특허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분할출원을 한 때⁷⁶⁾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분할출원이 제2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이 법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⁷⁷⁾
2.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⁷⁸⁾
3. 제54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⁷⁹⁾
4. 제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⁸⁰⁾

③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하려는 자는 분할출원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⁸¹⁾

④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이 제54조 또는 제55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제54조제7항 또는 제55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⑥ 분할출원의 경우에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⑦ 분할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은 제42조의3 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⑧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76) 출원일 소급효 예외

77) 확산지위

78) 출원시 의사에 의한 공지예외적용 절차 취지표시,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증명서류제출

79) 출원시 조약우선권주장 절차 취지, 국가명, 연월일 기재

80) 출원시 국내우선권주장 절차 취지, 선출원기재

81) 분할출원, 변경출원 절차

주체	분할출원	변경출원
	원출원인	원출원인
기간	명세서·도면 보정기간, 거절결정서 받은 후 3개월, 특허결정서 받은 후 3개월or설정등록일 중 빠른 날	최초 거절결정서 받은 후 3개월 전
서면	분할출원시 출원서에 취지, 원출원 표시	변경출원시 출원서에 취지, 원출원 표시
효과	출원일 소급효(예외 있음)	출원일 소급효(예외 있음), 원출원 취하간주

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본다. <개정 2014. 6. 11.>

④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외국어특허출원”은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으로,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은 “제201조제5항에 따른 최종 국어번역문(제201조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신설 2014. 6. 11.>

⑤ 삭제 <2001. 2. 3.> [제목개정 2014. 6. 11.]

제209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3조제1항²⁴⁹⁾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후)에만 변경출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

249) 출원 후 **최초거절결정서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아무 때나 변경출원할 수 있다는 규정

제210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²⁵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50) 출원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아무 때나 심사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

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낸 후
2.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후 [전문개정 2014. 6. 11.]

제211조(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8조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같은 조약 제35조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적혀 있는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

출원공개 (64②ii)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원공개 불가
분할출원 국어번역문 제출기간(52㉞)	분할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이면 일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 일로부터 30일 이내 국어번역문 제출 가능
변경출원 국어번역문 제출기간(53㉞)	변경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이면 일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 일로부터 30일 이내 국어번역문 제출 가능
분리출원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시규①)	분리출원은 외국어출원, 임시명세서출원 不可, 반려사유
정당권리자출원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관련 규정 無

5. 청구범위 제출 유예

(의의)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현행 선출원제도 하에서는 빠른 출원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는 출원의 기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절차다.

(내용)

청구범위 제출 (42-2②)	시기	제3자가 심사청구했다는 취지를 통지 받은 날부터 3월 또는 최후선일로부터 1년 2월 중 빠른 날까지 청구범위 보정 must
	절차	47①에 따른 보정서 제출(보정시 신규사항 추가 금지 47②)
청구범위 미제출 시 취급 (42-2③)	법정기간내에 청구범위 미제출시 출원 취하 간주	

(제한) 심(출원인), 조는 청구범위 제출 후에만 가능하다.

분할출원 청구범위 제출기간 (52㉞)	분할출원에서 청구범위 제출 유예한 경우는 일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범위 제출 가능
변경출원 청구범위 제출기간 (53㉞)	변경출원에서 청구범위 제출 유예한 경우는 일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범위 제출 가능
분리출원 청구범위 제출기간 (시규11①)	분리출원은 외국어출원, 임시명세서출원 不可, 반려사유
정당권리자출원 청구범위 제출기간 (시규11①)	청구범위 제출 기한 지난 후 청구범위 기재 없이 출원한 정당권리자 출원서는 반려
심사청구 (59② i)	출원인은 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청구 不可
출원공개 (64② i)	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원공개 불가

	4개월 이내 증명서류 제출 / 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 보정 또는 추가 가능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이내 / 선출원일부터 1 년 4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 보정 또는 추가 가능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심사청구기간(제59조)	출원일부터 3년 이내
출원공개시기(제64조)	우선일부터 1년 6개월 지난 후
재심사청구기간(제67조의2)	특허결정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설정 등록일 전까지, 거절결정서 받은 날부터 3개 월 이내
특허료 납부기간(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 조 제5항,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제 3항)	특허결정서/특허결정심결문 받은 날부터 3 월 이내 원 납부기간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 보전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 개월 이내
특허료·수수료 반환청구기간(제84조)	통지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기간(제90조 제2항, 제92조의3 제2항)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존속기 간만료 전 6개월 이전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특허취소신청기간(제132조의2)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 이내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제 132조의17)	거절결정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국제특허출원의 각종 번역문제출기간(제201 조 제1항, 제204조, 제205조)	제203조서면(국내서면제출기간)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도면·요약서 (국내서면제출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 PCT19조·34조(기준일)
국제특허출원의 공지의외적용주장 기간 특 례(제200조, 시행규칙 제111조)	기준일부터 30일 이내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의 특허관리인 선임 기간 특례(제206조, 시행규칙 제116조)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
공시송달 효력발생시기(제219조)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 후 / 특허 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

참고로 출원일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대표적인 예로써 공지의외적용 증명서류 제출(제30조 제2항), 심사청구(제59조 제2항), 국내우선권주장시 선출원 취하간주시점(제56조 제1항),

2) 거절이유(92-4) 3개

- 출원일부터 4년¹¹⁹⁾ 및 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설정등록된 경우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연장신청할 것. 단,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92-2②)
- 특허권자가 연장등록 출원할 것
-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동으로 출원할 것

3) 절차

(연장등록출원서 제출, 92-3①) 설정등록일부터 3월이내 출원할 것(92-3②)

(연장등록출원서 보정 可, 92-3④)

범위¹²⁰⁾ - 연장신청기간, 연장이유

시기 - 심사관의 연장등록여부결정(특허청장의 등본 송달) 전까지, 단 거절이유통지 받은 후에는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可

(심사) 출원에 대한 심사규정 준용(93)¹²¹⁾ - 57①¹²²⁾, 63¹²³⁾, 67¹²⁴⁾, 148 i - v 및 viii¹²⁵⁾

(불복) 거절결정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월**내 거불심청구 可(**132-17**), 재심사청구는 不可

4) 연장등록

- 등록요건(92-4) 만족 시 등록결정(92-5①)
- 특허원부에 등록(92-5②)
- 특허공보에 게재(92-5③)
- 허가 등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된 경우와 달리 연장된 발명의 범위 제한×

나.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의의/거절이유/절차/연장등록)

1) 의의

타법에 의한 실시행위의 제한으로 인한 특허권자의 불이익을 해결하고자,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이 필요하고, 당해 허가·등록을 위한 요건의 구비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령7)이 정한 발명의 경우,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한 차례만 5년 이내로 존속기간 연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119) 34,35조 出 → 정당권리자 출원일(무권리자 출원일부터 계산×)
분할,분리,변경 出 → 분할,분리,변경 출원일(원출원일부터 계산×)
국제특허 出 → 203①서면 제출한 날(국제출원일부터 계산×)
214조 出 → 214①결정 신청한 날(국제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날부터 계산×)

120) 연장대상 특허(실용신안)번호는 보정 不可

121) 단,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보정각하 등의 규정은 준용×

122) 심사관이 심사

123) 거절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이 때 구체적인 거절이유를 알려주어야 함.

124) 연장등록결정 및 연장등록거절결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붙여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125) 공정한 심사의 진행이 우려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 심사관 제척 가능함.

2) 거절이유 5개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91 i)

- 신물질을 이용한 의약품·마약·농약 발명일 것(령7)
- 하나의 특허에 대한 연장은 1회 可
- 하나의 특허에 대하여 복수의 허가가 있는 경우 최초 허가로 연장 可
- 하나의 허가에 대하여 복수의 특허가 관련된 경우 특허 각각 연장 可(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3)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등록된 통상실시권자가 허가 등을 받을 것(91 ii)

설정등록일 이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¹²⁶⁾에 대하여 한 차례만 5년 이내로 연장 신청할 것(91 iii)

- 품목허가를 받기 위하여 식약처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임상시험기간 + 식약처에서 소요된 허가신청 관련서류의 검토기간 - 허가신청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소요된 기간

특허권자가 연장등록 출원할 것(91 iv)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동으로 출원할 것(91 v)

3) 절차

(연장등록출원서 제출, 90①)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 출원할 것, 단 존속기간 만료 전 6월이후에는 不可(90②)

(연장등록출원 효과, 90④) 존속기간 연장 간주¹²⁷⁾, 단 연장 등록 거절 결정 확정되면 × (연장등록출원서 보정 可, 90⑥)

범위¹²⁸⁾ - 연장 대상 특허청구범위 표시, 연장 신청 기간, 허가 등의 내용, 연장이유 시기 - 특허청장의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 송달 전까지, 단 거절이유통지 받은 후에는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可

(심사) 출원에 대한 심사규정 준용(93)¹²⁹⁾ - 57①¹³⁰⁾, 63¹³¹⁾, 67¹³²⁾, 148 i - v 및 viii¹³³⁾

(불복) 거절결정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월**내 거불심청구 可(**132-17**), 재심사청구는 不可

4) 연장등록

- 등록요건(91) 만족 시 등록결정(92①)
- 특허원부에 등록(92②)

126)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4 本

127) 특허청장은 출원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 must(90⑤)

128) 연장대상 특허번호는 보정 不可

129) 단,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보정각하 등의 규정은 준용×

130) 심사관님이 심사

131) 거절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이 때 구체적인 거절이유를 알려주어야 함.

132) 연장등록결정 및 연장등록거절결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붙여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133) 공정한 심사의 진행이 우려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 심사관 제척 가능함.

(요건) 155, 156

주체	청구인 적격(당사자 참가) 또는 심판결과에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보조참가)가 있을 것
객체	당사자계 심판일 것(단, 통신히 제외)
기간	심리종결 전
서면	담당 심판장에게 참가신청서 제출

(참가효력)

- 당사자 참가인 - 피참가인과 동등한 법률상 지위 가짐, 피참가인이 심판 청구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 속행 可(155②)
- 보조 참가인 - 일체의 심판절차 可(155④)
- 참가인에 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원인이 있는 경우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당해 효력 발생(155⑤)
- 참가인 및 참가가 거부된 자에게도 심결 또는 결정 등본 송달(162⑥) → 그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 특허법원에 불복 可²³²(186②)

3. 거불심 (의의/주요 방식요건/실체심리/심결)

가. 의의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132-3)

나. 주요 방식요건 (141 / 심판청구이익)

청구인	특허출원	거절결정 받은 출원인(132-3) ²³³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거절결정 받은 출원인(132-3) ²³⁴
대리인	임의 대리인은 특별수권 要(6)	
청구대상	특허출원	거절결정의 부당성 / 보정각하결정의 부당성(51③) / 심사절차의 위법성 ²³⁵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거절결정의 부당성 / 심사절차의 위법성
청구시기	거절결정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月 이내 ²³⁶	

232) 특허는 널리 제3자에게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특허에 관한 확정된 실체(본안)심결의 효력인 일사부재리도 누구에게나 미친다. 때문에, 불리한 심결의 확정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심판의 참가는 넓게 허용하고 있다. 나아가, 동일한 취지에서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특허법원에서의 불복의 기회도 넓게 허용하고 있다.

233) 공동출원의 경우 공동출원인 전원이 청구할 것(139②)

234)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특허권자 전원이 청구할 것(139②)

235) 해당 거절이유에 대해 의견제출기회 부여 없이 거절결정한 경우

4. 출원공개

주요내용정리		
효과	서면경고 가능(국어 PCT 출원의 경우 국제공개시부터 가능) 보상금청구권 발생 가능 확대된 선원 지위 발생 전제조건 제3자 실시에 대해 우선심사신청 가능(특허법 제61조 제1호)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 발생 기탁된 미생물 시료분양 가능(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서류 열람 가능(특허법 제216조)	
공개×	출원공개	공개 전 출원절차 종결된 경우 청구범위 미기재 번역문 미제출 등록공고한 경우 비밀취급된 발명 공서양속 문란, 공중위생 해할 염려 있는 사항
	국제공개	공개 전 출원절차 종결된 경우(PCT21) 공서양속 문란(PCT21) 국제공개 필요 없다고 선언한 국가만 지정한 경우(PCT64)
	등록공고	비밀취급된 발명
특허공보 게재 주요사항		
심사청구(특허법 제60조 제2항)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 출원(특허법 제90조 제5항)		
특허권 설정등록,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특허법 제87조, 제92조 제3항, 제92조의5 제3항)		
정정(특허법 제136조 제13항)		
상속인 부존재, 법인청산에 따른 특허권 소멸(시행규칙 제55조)		
공시송달(특허법 제219조)		

(분할·분리출원 우선권 주장 자동승계) 52④⑤, 52-2②

분할·분리출원은 원출원 우선권 주장 효력 자동승계. 자동승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분할·분리출원한 날부터 30일 이내 그 우선권 주장 취하 可

9. 분할·분리·변경 출원절차

(의의) 분할출원이란 45조 위반 해소 또는 출원일체원칙⁷⁴⁾ 하에서의 원 출 최명도 내의 특정 발명 보호 위해 2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는 원 출의 일부를 1 또는 2 이상의 새로운 특허 출으로의 분할을 허용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변경출원이란 출원인의 이익 보호 위해 출원 후 특허·실용신안 중 유리한 형식으로서의 변경을 허용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요건)

	분할	변경
주체	원 출인(52①)	원 출인(53①)
시기 ⁷⁵⁾	47① 보정가능기간 거절결정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내(52①) ⁷⁶⁾ ⁷⁷⁾ 특허결정·특허결정심결(재심포함)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과 설정등록일 중 빠른 날	설정 등록되기 전(심사기준) + 최초 거절결정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내(53①) ⁷⁸⁾
객체	원 출 최명도 범위 내(52①) ⁷⁹⁾	원 출 최명도 범위 내(53①) ⁸⁰⁾
절차	분할출원시 출원서에 분할 출 취지 기재, 원 출 표시(52③)	변경출원시 출원서에 변경 출 취지 기재, 원 출 표시(53③)

74) 청구항 중 일부라도 거절이유 존재 시 당해 출 전체가 특허 不可

75) 단, 원 출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42-3②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분할 또는 변경할 수 있다(52①ⁱ단서, 53①ⁱ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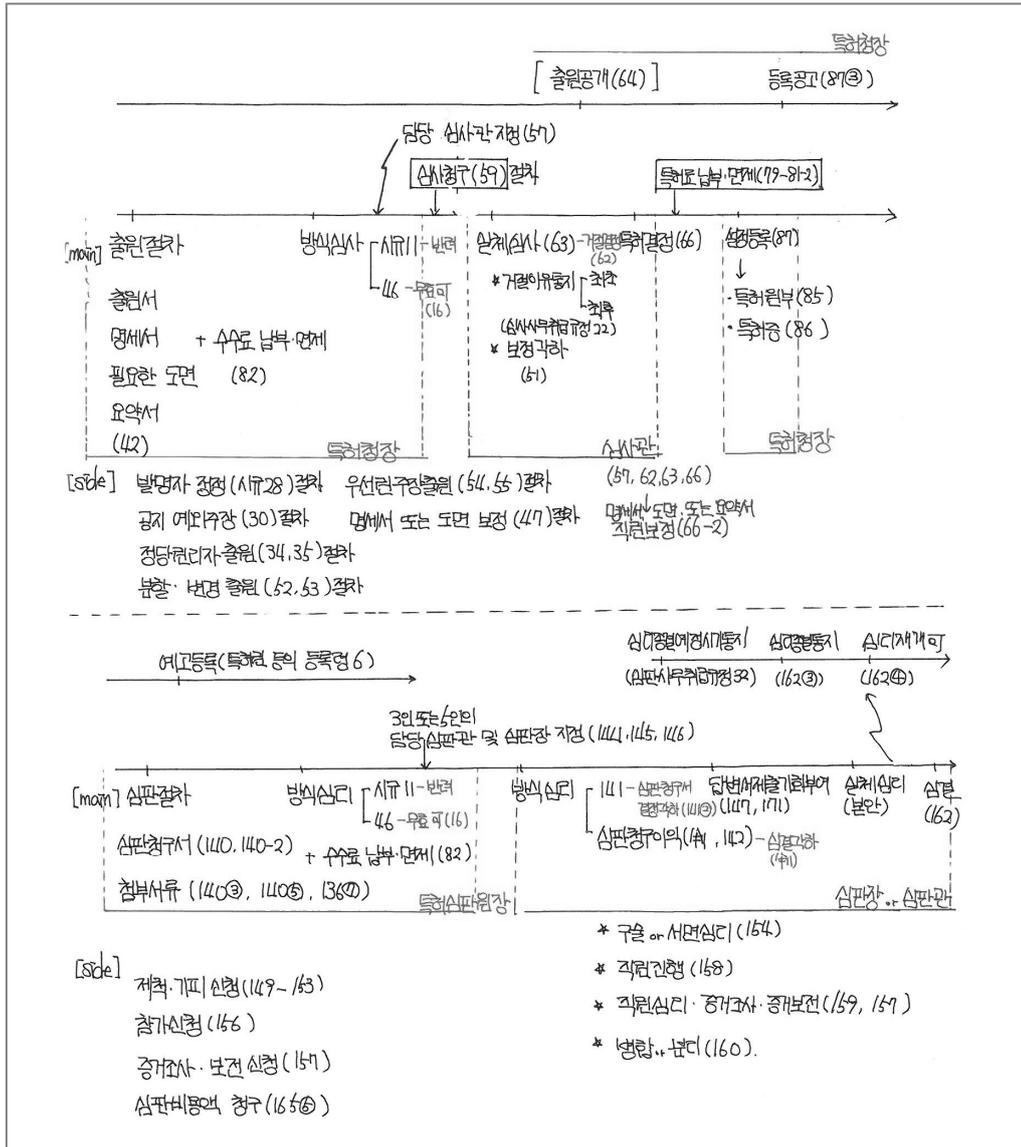
76) 한편,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도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132-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함)에는 분할출원할 수 있다(심사기준).

77) 다만, 재심사가 청구된 이후에는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므로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행위, 즉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 및 분할출원은 할 수 없다(심사기준).

78)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그 거절결정이 재심사청구 또는 심결에 의해 취소되었다거나 그에 따라 거절결정등본을 다시 송달 받아 3개월 이내라고 하더라도 변경출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재심사청구 등에 따른 거절결정의 취소로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심사기준).

79) 실체심사 대상임 - 거절이유, 정보제공, 직권재심사 및 무효사유

80) 실체심사 대상임 - 거절이유, 정보제공, 직권재심사 및 무효사유



나. 종류 (결정계 심판/당사자계 심판/부수적 심판)

1) 결정계 심판

거불심(132-17), 정정(136)

2) 당사자계 심판

특허무효(133),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134), 정정무효(137), 권리범위확인(135), 통실히(138)

(요건) 155, 156

주체	청구인 적격(당사자 참가) 또는 심판결과에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보조참가)가 있을 것
객체	당사자계 심판일 것(단, 통신히 제외)
기간	심리종결 전
서면	담당 심판장에게 참가신청서 제출

(참가효력)

- 당사자 참가인 - 피참가인과 동등한 법률상 지위 가짐, 피참가인이 심판 청구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 속행 可(155②)
- 보조 참가인 - 일체의 심판절차 可(155④)
- 참가인에 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원인이 있는 경우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당해 효력 발생(155⑤)
- 참가인 및 참가가 거부된 자에게도 심결 또는 결정 등본 송달(162⑥) → 그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 특허법원에 불복 可²³²(186②)

3. 거불심 (의의/주요 방식요건/실체심리/심결)

가. 의의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132-17)

나. 주요 방식요건 (141 / 심판청구이익)

청구인	특허출원	거절결정 받은 출원인(132-17) ²³³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거절결정 받은 출원인(132-17) ²³⁴
대리인	임의 대리인은 특별수권 要(6)	
청구대상	특허출원	거절결정의 부당성 / 보정각하결정의 부당성(51③) / 심사절차의 위법성 ²³⁵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거절결정의 부당성 / 심사절차의 위법성
청구시기	거절결정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²³⁶	

232) 특허는 널리 제3자에게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특허에 관한 확정된 실체(본안)심결의 효력인 일사부재리도 누구에게나 미친다. 때문에, 불리한 심결의 확정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심판의 참가는 넓게 허용하고 있다. 나아가, 동일한 취지에서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특허법원에의 불복의 기회도 넓게 허용하고 있다.

233) 공동출원의 경우 공동출원인 전원이 청구할 것(139②)

234)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특허권자 전원이 청구할 것(139②)

235) 해당 거절이유에 대해 의견제출기회 부여 없이 거절결정한 경우